

재무운영위원회 규정

신설 2021.4.2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각종 재무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무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사부총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3.02.17.)

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 (개정 2023.02.17.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제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계팀장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 (개정 2023.11.20.)

1. 각종 재무 관련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(개정 2023.11.20.)

2. 자금 운용규정에서 규정한 자금(적립기금, 운용자금)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(신설 2023.11.20.)

3. 재무 및 자산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심의(개정 2023.11.20.)

4. 재무 및 자산의 투자기간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(개정 2023.11.20.)

5. 기타 본 대학교 재무 및 자산·자원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 심의(개정 2023.11.20.)

제4조 (회의 등)①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내·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재무운영위원회 및 자금운용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.(개정 2023.11.20.)

제5조 (서면결의)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,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6조 (회의록)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 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.

제8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관장한다.

제9조 (비밀유지의무) 위원장,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,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대학교에 제반 손해가 발생시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(개정 2023.11.20.)

제10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1.4.21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11.20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